

# 기업지배구조 헌장

2024.04.01



# 목차

## 전문

### 제1장. 주주

제1조. 주주의 권리

제2조. 주주의 공평한 대우

제3조. 주주의 책임

### 제2장. 이사회

제4조. 이사회 기능

제5조.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

제6조. 사외이사

제7조. 이사회 운영

제8조. 이사의 의무

제9조. 이사의 책임

제10조. 이사의 평가와 보상

### 제3장. 감사기구

제11조. 감사

제12조. 외부감사인

### 제4장. 이해관계자

제13조.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

제14조.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

### 제5장.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

제15조. 공시

제16조. 기업 경영권 시장

## 전문

조광페인트는 인류를 선도할 화학기술을 바탕으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류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장을 지향한다.

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며, 고객과 임직원, 협력사 더 나아가 인류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, 투명한 경영을 통해 “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화학기술을 세상에 실현한다.”는 경영이념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.

따라서 조광페인트는 다음과 같이 “조광페인트 기업지배구조헌장”을 제정하여 경영이념을 이루기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.

## 제1장 주주

### 제1조 [주주의 권리]

- ① 주주는 조광페인트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.
-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,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, 주주총회 각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2조 [주주의 공평한 대우]

-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,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-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.
- ④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, 주주가

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.

### 제3조 [주주의 책임]

-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,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## 제2장 이사회

### 제4조 [이사회 기능]

-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, 회사의 중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### 제5조 [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]

-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하며,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.
-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,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.
- ③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선임하고,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.
- ④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⑤ 이사는 성별, 연령, 지역, 종교, 교육수준 및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, 회사의 다양한 가치의 향상 및 주주권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.

### 제6조 [사외이사]

-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,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해야

한다.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해당 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된다.
- ④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,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,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.
- ⑥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·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 [이사회 운영]

- ①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 의사 결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,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.
- ③ 회사는 매 회의 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유지·보관한다. 특히 중요한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은 이사 별로 기록한다.
-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.
- ⑤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### 제8조 [이사의 의무]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,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### 제9조 [이사의 책임]

-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②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,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, 그러한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.
-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**제10조 [이사의 평가와 보상]**

- ① 이사회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을 주주와 장기적인 이해가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, 그 주요사항 및 주요경영진의 보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.
- ②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3장 감사기구**

**제11조 [감사]**

- ①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감사의 목표, 조직,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. 또한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④ 회사는 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 [외부감사인]**

-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주요 주주 등으로부터 법적, 실질적 독립성을

유지하여야 한다.

-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.
- ③ 외부감사인은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인해 회사 및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.
- ⑥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이해관계자

### 제13조 [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]

- ①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 한다.
- ② 회사는 소비자 보호,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.
- ③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,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 한다.
- ④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.
- ⑤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, 감자,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보호 절차를 준수한다.
- ⑥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.

### 제14조 [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]

- ① 채권자의 경영감시 형태와 수준은 회사의 특성에 따라 관련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- ② 근로자의 경영참가 형태와 수준은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.
-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,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

## 제 5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

### 제15조 [공시]

-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,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.
- ②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,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 및 공시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- ⑥ 회사는 실질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- ⑦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(CFO)는 공시되는 재무 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하여야 한다.
- ⑧ 회사는 기업 윤리규정(규범)을 제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
- ⑨ 회사는 중요한 기업 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,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# 제16조 [기업 경영권 시장]

- ① 회사의 인수, 합병,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.
- ③ 회사는 합병,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